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6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50조,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(안) 및 결산(안)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위원총수 : 12인이내
- 존속기간 :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.
- 위원선임 : 의장에 위임.